

國際食品規格計劃論

— 國際食品規格委員會 韓國代表로 참석하고 —

朴 奉 相

(保社部 食品1課長)

1. 國際食品規格委員會
設立의 過程

國際食品規格委員會(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은 食品規格의 分野에 있어서는 WHO(世界保健機構)와 FAO(國際食糧農業機構)가 協力하여 設立한 世界的인 機關이다. 이 委員會는 그 規約과 같이 1961年의 FAO總會에서 처음으로 具體化된 것이다. 이것은 FAO總會에 있어 모든 國家의 消費者 및 生産者를 保護하는 手段으로써 世界的인 食品規格이라고 하는 重要性이 認識된 것이며 또한 FAO總會는 食品規格作成에 있어 衛生面에서의 WHO의 課業인 重要性을 認識하므로서 FAC의 事務局長에 對하여 「FAO가 提唱하고 있는 FAO와 WHO 共同의 國際食品規格計劃(Th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以下 合同計劃이라 한다)의 重要性에 對하여 WHO의 事務局長의 注意를 喚起할 것을 要請하였다. (그 以前 FAO總會는 구라과地域委員會의 要請을 받아 合同計劃을 提唱하고 있었다)

結局 이 FAO總會에서 「合同計劃의 第1回의 會合을 1962年 6월에 開催하고 將來 WHO와 FAO의 協力形態를 檢討할것과 國際食品規格委員會를 設立할것을 滿場一致로 決議하였다. 그리하여 元來부터 國際的인 食品規格計劃은 구라과地域委員會에서 行하여져 있는 것으로써 거기에서부터 事務를 引繼받아 이 總會에서 討議하였다.

FAO事務局長의 要請을 받은 WHO事務局長은 合同計劃의 贊否를 WHO의 第29回의 執行理事會(WHO總會의 下部機關임)에 附議하였든바 合同計劃의 第1回會合을 1962년에 開

催하고 그후의 活動計劃을 거기에서 檢討할것을 贊成하는 結論을 얻었다.

이와 같은 FAO總會는 WHO執行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合同計劃의 第1回會合을 1962年 10月 1일부터 5일까지 제네바에서 開催되어 合同計劃의 發足과 그의 中核機關을 國際食品規格委員會로 하는 것을 第11回 FAO總會의 決議에 關하여 同意하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決定을 WHO 總會에 諮問받기 위하여 WHO事務局長에게 要請되었으며, 同時에 兩事務局長에 對하여 第1回國際食品規格委員會를 1963年 6월에 開催할것을 要請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要請을 받은 1963年の 第16回 WHO總會는 合同計劃의 發足과 그의 中核機關을 國際食品規格委員會로 하는 것으로 贊成決議하고 同時에 同委員會規約의 採擇과 第1回委員會의 1963年 6月開催에도 贊成決意를 하였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비로소 合同計劃과 國際食品規格委員會는 成立하게 된 것이다.

合同計劃은 國際食品規格委員會와 그의 執行委員會(The Executive Committee)라고 하는 2個의 機關을 갖이고 있으며, 前者는 合同計劃에의 全加盟國이 參加하는 合同計劃의 中心機關이다.

後者는 世界의 各地域을 代表하는 몇個國家가 參加하는 合同計劃의 執行機關이다. 또한 合同計劃은 FAO와 WHO의 職員으로 構成되는 事務局(Secretariat)도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質問도 나올수 있다. 즉 FAO와 WHO가 어떤 權限에 基因하여 이와같은 合同計劃을 始作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WHO에 關하여 言及한다면 WHO憲章(Constitution of W.H.O)의 다음 各項과 같은 根據를 들수가 있다.

「WHO總會」는 必要的 機關을 創設할 수 있다. 또한 WHO는 모든 사람은 最大限可能한

健康을 維持하는」라고 하는 WHO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要的 措置를 할 수 있다. 그리고 世界的인 食品規格을 作成하고 普及할 것을 또한 憲章에 의하여 WHO에 要請하고 있다.

이와같이 第16回 WHO總會의 決議는 WHO憲章에 따라 그의 目的을 推進하려고 하는 것이다.

FAO에 있어서도 이와같이 「他的 國際機關과 같이 合同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는 憲章에 따라 위와같은 決定이 있게 되었는 것이다.

結局 食品規格의 分野에 있어서는 現在까지 國際的인 行動에 의하여 消費者의 健康을 守護하려고 하는 몇개의 國際的인 組織이 存在하고 있으나 이 合同計劃은 이에 相應하는 새로운 時代에 副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合同計劃은 國際機關間的 協力和 協調라고 하는 面에서 興味깊게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즉 2個의 國際機關의 業務가 重複된 다든지 깊은 關係를 가질때에는 하나의 合同組織을 設置하게 되어 時間과 勞力 및 經費를 二重으로 消費하는 代身 2個의 組織이 協調하여 業務를 進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유이 合同組織은 두개의 機關이 相互달리 活動하는 것보다는 2개의 機關의 組織이나 能力을 充分히 活用하여 業務를 進展하게 하는것이 期待되는 것이다.

2. 國際食品規格委員會의 權限

國際食品規格委員會(以下 委員會라 略述한다)의 모든 權限에 對하여 委員會規約(Statu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以下規約이라 略述한다)은 明確하게 하고 있는 할 수 없다. 委員會의 權限에 對하여는 合同計劃에 關한 모든 問題에 대하여 FAO 및

WHO의 事務局長에게 助言勸告를 行할 수 있는 것과 下部機關(具體의인 例로서 食品衛生規格部會, 雪糖規格部會등을 指稱)을 設置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規約 또는 委員會手續規則(Rules of Procedure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以下 “手續規則”이라고 略述함)의 內容에는 規定이 없다. 그렇지만 規約 第1條를 手續規則이나 委員會의 設立經過등을 參考하여 詳細히 檢討하여 볼것 같으면 委員會의 權限의 全體像을 把握할 수 있다. 規約 第1條에는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다.

第1條

食品規格委員會(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은 第5條의 規定에 따라 FAO/WHO合同食品規格計劃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遂行에 關한 모든 事項에 對하여 FAO 및 WHO의 兩事務局長에 對하여 勸告를 행하고 그의 諮問에 應하는 責任을 가진다. FAO/WHO合同食品規格計劃의 目的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a) 消費者의 健康을 保護하고 食品貿易의 公正을 保證하는 것.
- (b) 國際政府機關 및 非政府機關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모든 食品規格業務의 調整을 促進하는 것.
- (c) 適當한 機關을 通하여 또한 그의 援助에 依하여 規格案作成의 優先順位를 決定하고 새로히 規格原案作成의 開始 또는 指導를 行하는 것.
- (d) 위에 따라 作成된 規格을 完成하고 各國政府의 受諾후 그의 規格을 地域規模 또는 世界規格으로 하여 食品規格集(Codex Alimentarius)를 出版하고 適當하다고 認定될때에는 他的 機關에서 完成한 國際規格을 包含하여 出版하는 것.

(e) 既刊의 規格에 對하여 그後 進歩된 事項에 對하여 適宜調查를 行하고 이를 改正하는 것.

第1條의 (a)로부터 (e)는 合同計劃의 目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이것은 同時に 委員會의 여러가지 權限을 提示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規約는 國際機關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食品規格業務의 調整을 促進하는 것과 規格案作成의 優先順位를 決定하여 規格案作成의 開始 또는 指導를 行하는 것이다. 또한 食品規格을 完成하고 改正하며 出版함에 따른 規定이 있으나 이것은 어떠한 機關, 즉 委員會에서 實際적으로 實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合同計劃의 中心機關으로하여 設立된 委員會의 目的을 考慮한다면 規約이 定하고 있는 것으로서 實行하지 않으면 안될 몇개의 項目을 單純히 原則論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委員會의 設立經過를 생각할때 이와같은 點은 더욱 確實하여지는 것이다.

委員會設立의 第一步가 되었던 FAO總會는 合同計劃의 目的과 그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適切한 機關으로서의 委員會에 關하여 論議를 하며 委員會의 權限에 對하여도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設置하는 委員會는 規格案作成의 優先順位의 決定과 各規格案作成을 위한 準備作業의 가장 適切한 技術部會등의 分離를 第一의 事業으로 한다……」 또한 當時 FAO總會는 委員會에 依하여 完遂하여야 할 事業과 機能을 確信하고 있었든것 같다.

또한 規約과 手續規則에 의하면 委員會는 規格作成을 위하여 下部機關을 設置하는 權限과 規格의 作成手續을 定하는 權限이 賦與되고 있었든 것이다.

이와같은 權限은 委員會의 事業을 完遂할려

고 하는 委員會設置者의 意圖가 더욱 明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規約 第1條에서 委員會의 權限을 明確하게 表明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마 規約草案作成時의 큰 미스라고 生覺할수 있다.

以上 委員會 權限을 概括하여 檢討하였으나 다음에는 이와같은 各權限에 對하여 檢討를 加해보기로 한다. 그 權限을 再述하면

1. FAO 및 WHO의 事務局長에 對한 助言勸告
2. 下部機關의 設置
3. 食品規格案의 作成
4. 規格의 出版
5. 食品規格關聯事業의 調整이다.

1) FAO 및 WHO의 事務局長에 對한 助言勸告

이것은 規約 第1條에 明確하게 하고 있는 委員會의 權限의 하나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委員會는……合同計劃의 遂行에 關한 모든 事項에 對하여 FAO 및 WHO의 兩事務局長에 對하여 勸告를 行하고 그의 諮問에 應하는 責任을 가진다.」 따라서 委員會는 合同計劃의 遂行에 關係된다고 생각되는 問題에 對하여는 兩機關의 執行責任者에 對하여 勸告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合同計劃의 遂行目標에 向하여 取할수 있는 具體적인 行動, 예를 들면 食品規格에 關한 會議의 開催나 豫算에 對한 要求등을 行할수가 있는 것이다.

委員會는 이와같은 方法으로 FAO와 WHO의 事務局長에 對하여 助言을 할수 있게 하고 있다. 委員會가 兩事務局長으로부터 諮問을 받을때에만 助言을 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勸告할수도 있음을 規約의 條文은 明白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兩事務局長의 役割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勸告를 單純히 WHO 또는 FAO의 適當한 機關에 依하는 것으로 足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같은 것을 받아 무엇인가 適切한 行動을 取하여야 하는가는 確實히 하고 있지 않다.

이 問題는 規約 第1條와 第5條의 連關된 問題로서 나타나고 있다.

第1條는 第5條의 規定에 따라 委員會는 勸告를 行할 責任을 享有하고 있음에 對하여 第5條는 委員會는 兩事務局長을 通하여 FAO總會 또는 WHO의 適當한 機關에 推薦을 行하는 責任을 享有하고 있기 때문이다.

兩事務局長에 期待하고 있는 것은 아마 勸告를 받아들인후 그 實行이나 適用을 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手段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즉 이點에 대하여 그들은 큰 裁量의 餘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FAO 및 WHO의 事務局長에 對하여 「兩機關에 對하여 행한 政策·計劃 또는 財政을 包含하는 委員會의 勸告는 FAO 및 WHO의 執行機關에 對하여 適當한 措置를 取할 注意를 喚起한다.」는것을 手續規則의 規則Ⅷ의 3에 根據를 두는 것이다.

他的 勸告로서 위의 條文에 包含하지 않는 것은 兩事務局長에 依하여 處理되는 것이다. 따라서 事務局長의 役割은 單純히 委員會와 FAO 또는 WHO의 連絡役以上の 것이다. 그러나 實際로 委員會는 WHO 또는 WHO의 兩事務局長에 對한 推薦이나 勸告와 兩機關自身에 對한 推薦이나 勸告를 各各 區分하여 行하고 있다. 예를들면 1973년에 開催勸告된 아프리카地域을 위한 食品規格會議에 關하여 委員會는 兩事務局長에게 아프리카諸國의 代表의 提案을 考慮할것을 求하는一方, 會議의 여러

가지 면에서 FAO 또는 WHO에 의한會議를 위하여 必要한 準備를 할것을 特히 提案을 行하고 있는 것이다.

委員會는 또한 兩事務局長을 包含한 그의 모든 委員國에도 勸告나 提案을 할수 있다고 生覺된다. 왜냐하면 手續規則은 勸告나 提案을 包含한 委員會의 報告는 FAO와 WHO의 事務局長을 通하여 委員國에 配布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兩事務局長을 包含한 委員會에서는 FAO와 WHO의 食品規格計劃을 遂行하기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의 委員國에 對하여 勸告를 하고 助言이나 提案을 行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委員會는 이의 權限을 他的 權限, 特히 食品規格의 作成에 關係되는 것과 比較할것 같으면 그와 같이 重要한 것은 아니다.

2) 下部機關의 設置

委員會는 그의 業務를 容易하게 하고 그의 義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下部機關을 設置하는 權限을 갖는다.

이 權限은 規約 第7條에 規定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必要한 資金을 얻을수 있다면 委員會는 그의 職務의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下部機關」을 設置하는 權限을 賦與하고 있는 것이다.

手續規則의 規則 IX의 I에는 委員會가 設立한 下部機關의 種類가 定하여져 있다. 이것은 規格案의 完成을 위하여 委員會職務遂行에 必要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下部機關, 委員會에 提出하는 規格案을 準備하기 위한 規格部會 및 地域 또는 國家群에 關한 食品規格의 準備에 있어 一般的調整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調整委員會인 것이다.

따라서 委員會에 의한 下部機關의 設立은 다음의 두 가지의 條件이 있다.

(a) 그것은 委員會의 判斷에 의해 그의 職務遂行에 必要한 것이 아니면 않된다.

(b) 設立할 때에는 委員會에서 이에 所要되는 充分한 資金이 없으면 아니된다.

또 한편으로 委員會는 必要性 其他, 下部機關의 設置에 關하여 決定하는 權限을 갖고 있으며, 委員會는 下部機關의 設立에 關한 出費를 包含한 決定을 내리기前에 FAO 및 WHO의 兩局長이나 어느 一方의 事務局長으로부터 行政的·財政的인 것을 包含한 報告書를 檢討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資金의 有無가 委員會의 이의 權限의 實行에 있어 決定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다.

委員會는 規約 第7條 및 手續規則의 規則 IX의 1의 (a) 및 (b)에 따라 많은 下部機關을 設立하고 있다. 그러나 各各의 規格部會의 活動費用은 그의 部會의 主催國으로하여 活動하는 委員會의 會員國에 의하여 負擔되어지는 것이 特記할만한 것이다. 그러한 國家는 그의 部會의 議長을 選任하는 責任을 包含하는 主催國으로서 活動하는 國家들의 意思에 基因하여 通常 委員會에 따라 指名된다.

3) 食品規格案의 作成

이것은 委員會의 가장 重要한 權限이다. 規約에는 明確히 表現되어있지 않으나, 規約 第1條(c)에 合同計劃의 目的이라고 規制되어 있다. 그러나 本條文은 手續規則, 食品規格 및 取扱規範作成手續과 거기에 定하여져 있는 委員會의 權限과 總合하여 考慮할때 確實히 上記의 權限이 存在하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 이와같은 條文에 따라 委員會는 어떠한 規格을 作成할 것인가, 優先順位 等等을 決定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規定은 當然한 것이고, 合同計劃의 第一의 目的인 消費者의 健康保護를 目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委員會는 出版후에 規格의 改正 및 再檢討를 行할수가 있다. 이와같은 機能을 다하기 위하여 委員會는 職務遂行上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下部機關을 設置할수 있는것은 既히 論한바와 같다. 새로히 委員會는 手續規則에 따라 規格作成手續을 定하는 權限을 갖이고 있다. 委員會는 規格作成을 위한 手續으로서, 즉 「食品規格 및 取扱規範作成手續」을 作成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委員會는 어떤 規格作成의 決定을 하고 그것을 下部機關에 委任하고 있다. 그리하여 規格原案이 되면 그것은 여러가지의 段階에서 委員會, 下部機關, 委員會會員國 그리고 問題되고 있는 食品規格에 關聯이 있는 國際機關과 協議가 行하여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正式으로 各國政府이 受諾要請이 있기 前에 各國政府에는 2回 意見을 論議할 수 있는 機會가 賦與되는 것이다. 食品規格部會에서도 2回 檢證하는 機會가 있다. 또한 委員會에서도 2回 같은 機會가 賦與되고 있다. 이와같은 것은 非公式協議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規格原案이 勸告案이 되기 前에 意見交換이나 議論, 修正, 其他를 위하여 充分한 機會가 賦與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機會는 規格에 關한 委員會會員國의 異論이 있는 部分을 좁히고, 그에 따라 會員國에 의한 受諾의 機會를 높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會員國의 意見은 또한 規格에 有益한 要素를 追加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意見形成의 過程 意見交換 및 議論은 合同計劃의 目的達成에 따라 重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하여 이루어진 食品規格은 作成手續을 通하여 會員國의 活動如何에 따라

그의 國家에서 受諾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食品規格의) 手續을 길다고 하지만, 그것은 規格原案의 段階로서 各國政府가 意見을 充分히 낼수 있으며, 또한 委員會가 規格의 正確한 方向을 準備하고 確認할수 있게 하기 위한 意圖라고 할수 있다」 또한 「어떻한 國際規格이라 하더라도 그에 關하여 考慮할수 있는 時間을 各國政府에 充分히 賦與하지 않는 것은 短限目으로 보아 結局失敗하기 때문이다. 適正한 手續의 缺如는 食品規格에 關한 國際的인 合意를 얻기 위하여 많은 試金石이 된다고도 하였다.

다음으로 食品規格에 對하여 言及하기로 한다. 食品規格은 安全하고 衛生的인 食品을 消費者에게 保證하는것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의 基準을 말한다. 또한 食品規格은 「食品規格의 樣式(Format of Codex Standards)」에 따라 作成된다. 이 樣式은 各規格中에 包含하여야 할 記載事項, 例를 들면 使用可能한 添加物의 名稱, 該當하는 경우에는 最大許容量, 殘留農藥規格部會에 따라 定하여진 殘留農藥의 基準 其他汚染物質, 其他를 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要求記載事項은 非衛生的인 食品 添加物, 食品中の 汚染物質 그리하여 거짓 또는 不正한 主張으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는 役割을 다한다.

萬若 委員會가 規格作成中에 이와같은 事項이 不充分하여 받아들일수 없다고 判斷될 때에는 그 規格은 그 以後의 段階에는 진척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경우는 天然鑛水規格에 있어 實際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天然鑛水에 있어 구라과地域規格은 天然鑛水部會에 依하여 進行되었다. 規格의 成案이 상당히 진척된 段階에 이르러 될때까지 天然鑛水의 定義가 健康에 좋은 特質에 關한 一定한 主張을

包含하고 있는지 與否에 대하여 아무런 檢討가 없었다. 즉 天然鑛水を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天然鑛水是 天然 또는 採掘에 의하여 地下水로부터 얻어진 細菌學的으로 安全한 것이다

- ① 그의 特別한 性質에 따라 健康에 좋은 特質을 갖이고 있고
- ② 그 原水는 병조립후 1kg 中에 적어도 1,000mg의 鹽分이, 또한 적어도 250mg의 CO_2 및 嗜好的인 生理學的인 特質을 갖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主張의 妥當性은 委員會의 事務局에 의하여 作成된 文書에 따라 FAO와 WHO에 의하여 檢討되었다. 그에 依하면 「그와 같은 主張(위의 定義)은 原產國에서는 妥當할지 모르겠지만, 그와같은 물을 輸入하는 他國에 있어서는 반듯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指摘되었다. 몇 種類의 天然鑛水는 一定한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生理學的的特質을 갖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其他의 사람들에게는 妥當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生理學的的特質을 갖인 天然鑛水는 醫師의 助言에 따라 飲用되는 것이고 食品店보다 藥局을 通하여 販賣되는 것이다. 規格檢討 가운데 委員會는 1970年の Roma 의 第7回總會에서 規格은 그 以上の Step(step9)(Step: 食品規格 및 取扱規範作成手段에 定하여져 있는 規格作成의 程度를 나타내는 指標이고, 現在 Step 11 또는 12가 最終段階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進척하지 말것을 決議한바 있다. 그 以上の 進展은 特定の 天然鑛水가 健康에 좋은 特質을 갖이고 있다고 主張하는 國家가 그 特質을 明確하게 하는 基準을 設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委員會는 새로히 規格에서 天然鑛水가 健康에 좋은 特質을 지니고 있다고 認定하는 나라

에 의하여 提出된 데이터를 根據로 再考될때 그것은 食品規格作成手續에 의거 다음의 Step로부터 始作된다는 決定을 한것이다. 이에 關한 天然鑛水部會, 委員會 및 몇사람의 獨立된 專門家에 의한 意見一致를 위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天然鑛水の 規格에 對하여는 아무런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檢査나 評價의 시스템은 規格部會에 依하여 準備된 모든 食品規格에 適用되어 會員國 및 關係國際機關의 意見を 通하여 規格의 有害無益한 部分이나 誇張이나 根據없는 主張 또는 議論의 많은 見解가 會員國에 受諾勸告되기 前에 規格으로부터 取消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시스템은 汚染食品으로부터 消費者의 利益 및 健康을 保護하기 위한 役割이라고 할 수 있다.

現在까지 委員會는 40以上(1977年 7月 現在 87)의 여러가지 種類의 食品規格을 採擇하고 受諾을 위하여 各國에 發送하고 있다.

各國政府로부터의 回答은 全體로 보아 매우 良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規格의 出版

이것은 委員會의 權限의 하나이고 食品規格作成過程의 連續이라 할수 있다.

그것은 規格作成過程의 最終段階인 것이다. 規約 第1條(d) 世界規模規格作成手續의 Step 10(現在는 Step 11) 및 地域規模規格作成手續의 Step 10 및 11(現在는 11 및 12)에 規定되어 있다(國際食品規格에는 世界規模의 것, 特定地域을 위한 것, 特定國家群을 위한 것으로 豫定되고 있다.(手續規則 N) 이와같이 各項에 따르면 委員會는 會員國으로부터 받아들인 受諾에 對하여 適當하다고 判斷될때에는 勸告規格을 「世界規模食品規格」 또는 「地域規模食品規格」으로하여 「食品規格集」을 出版하는 權

限을 갖는다. 이와같은 權限은 極히 明確한 것으로서 그 以上の 說明을 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委員會가 어떤 規格을 「食品規格集」에 出版할때에는 FAO 및 WHO에 무엇인가 連絡도 없이 또는 同意도 받지 아니하고 自由로 行할수 있을까 하는 것에 對하여는 若干의 問題가 있다. 明確히는 되어있지 아니하지만 어떤 規格이 會員國의 過半數가 受諾하지 않을때에는 委員會는 그 規格을 出版하지 않는다고 생각할때 이는 不合理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委員會가 出版을 決定하는것은 적어도 몇개 國家가 受諾한것으로서는 아니되고 여하한 國家도 이를 受諾한 경우인 것이다. 즉 이와같은 判斷基準은 量的 問題가 아니고 質의 問題인 것이다. 가령 어떤 食品을 生産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消費도 하지 않는 多數의 國家가 그 食品의 規格을 受諾하였을지라도 그 食品의 가장 關係가 깊은 적은 數의 國家가 受諾하지 아니하면 그 規格은 出版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을 指摘하면 興味가 깊다. 즉 委員會는 會員國의 受諾狀態를 判斷하여 適當하다고 생각될때에는 「地域規模食品規格」을 「世界規模食品規格」으로 하여 出版할수 있는 權限을 갖이고 있다.

이와같이 委員會는 地域食品規格을 世界規模로하여 出版할수 있는지 여부를 判斷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法은 「地域規模食品規格作成手續」과 矛盾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매우 困難한것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同手續에 따라 地域規模規格의 採擇은 그 關係地域의 國家만이 投票할수 없는데 對하여 世界規模規格의 採擇은 모든 會員國이 投票하는 權利를 갖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地域規模規格은 그 地域特有的인 性質을

갖이고 있는 것으로서 會員國全體의 規格으로 하여 不適當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萬若 그렇게한 地域規格이 自國이나 自己의 地域에는 不適當하다고 생각되는 他地域의 國家는 그 規格을 受諾하지 않을수도 있고 또한 이와같은 段階에 있어서 委員會가 地域規模規格을 世界規模規格으로 할려고 하는 것을 反對할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補充意見도 있다. 1970年 最初の 勸告規格을 受諾要請하기 위하여 各國政府에 送付된 가운데 現在까지 이 權能을 委員會에 行하였는 것은 없었다.

規約 第1條(d)의 가운데는 他의 政府間 또는 民間의 國際機關이 完成한 國際規格의 出版에 對하여서도 規定하고 있다. 거기에서 말한 規格을 合同計劃에 依한 國際規格으로 出版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委員會에 의하여 出版되는 것인가 合同計劃에 屬한다고 하고 하는 생각이 明確하지 않다. 食品規格作成手續가운데는 他의 國際機關에 依하여 作成된 食品規格의 出版에 對하여 아무런 規定이 없는 것을 생각할때 委員會는 이 第1條(d)의 條文을 死文化된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食品規格의 出版은 적어도 國際食品規格을 食品製造者, 食品輸入者 및 消費者에게 可能한 入手하기 容易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關係者는 規格中 要求事項을 遵守하게 하는 것이다.

5) 食品規格關聯業務의 調整

合同計劃의 目的의 하나로서, 政府間 또는 民間의 國際機關에 의하여 行하여지는 모든 食品規格業務의 調整을 促進하는 것이다라고 規約 第1條(b)가 明示하고 있다.

이와같이 委員會는 下部機關이 새로운 事業

을 開始하기 前에 食品規格의 分野에 있어 他의 國際機關에 의하여 充分히 遂行되어 온 事業을 考慮할것을 要請하고 있다.

委員會는 이와같이 他의 國際機關과 意見을 交換하고 準備中の 規格을 連絡하고 또는 세미나를 갖이는 등의 일을 行할수 있다. 이와같은 機能을 達成하기 위하여 委員會는 많은 國際機關과 協力體制를 마련하여 왔으며, 이 가운데는 國際聯合 구과經濟委員會(UNEC E), 經濟協力開發機關(OECD), 아라브基準方法機構(ASMO), 國際오리브油會議(IOOC) 및 구과經濟共同體(EEC) 등이 있다.

3. 國際食品規格은 法的性質

國際食品規格集은 「……國際적으로 採擇된 食品規格을 統一의인 形態로서 提示한다. 이와같은 食品規格은 消費者의 健康을 保護하고 食品取扱의 公正을 保證하는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와같은 食品規格은 加工食品, 半加工食品 또는 生鮮食品을 不問하고 모든 主要한 食品에 適用된다. 이와같은 食品을 消費하는 사람들의 健康을 지키기위하여, 食品衛生, 食品添加物, 食品汚染物質, 標示등에 關한 要求事項을 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規格은 委員會의 會員國內에 있어서 위에서 밝힌 諸要求事項을 統一의를 提示하는 利點이 있다.

國際食品規格은 委員會의 會員國에 對한 것이나 完全한 獨立國이 아닌 委員會의 會員 및 會員國이 아닌 나라에 對하여서도 같다. 그와같은 나라가 規格을 受諾한 경우에 限하여 拘束할수 있는 勸告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會員은 委員會의 制度에 있어 完全受諾을 할 것인가 一部修正을 하여 受諾을 할 것인가 또는 全然受諾을 拒否할 것인가를 選擇할수가 있다.

國際食品規格은 委員會의 會員國의 同意에 따라 그 効力を 갖인다고 하는 뜻에서 「前法律的」인 性格을 갖인다고 할수 있다.

이와같은 點은 國際食品規格은 WHO憲章 第19條에 따라 WHO總會에 의하여 採擇되는 協定및 協約과 닮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와같은 協定및 協約은 WHO의 會員國으로부터 受諾될때에 限하여 그와같은 나라를 拘束한다 또한 協議草案의 作成과 그 外交的인 委員會에서의 採擇에 關해서 委員會의 活動은 國際民間航空機關(ICAO)의 活動과 類似하다. 合同委員會의 合同計劃에서도 委員會또한 ICAO에 있는 法律委員會에 依하면 補助機關은 어느쪽이든 委員會의 경우와 食品規格의 準備및 作成, ICAO의 경우와 協定草案의 準備및 그의 展開라고 하는 事業을 부여하여 있으며 언제든 引繼受諾 또는 批准에 그 効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하지만 이와같은 食品規格이 協定 또는 條約의 草案이라고 하는 뜻은 없다.

國際食品規格의 目的은 國際衛生規則(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의 目的과도 比較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要約한다면 國際食品規格도 世界衛生規則 및 ICAO 시카고 附則도 그의 拘束力은 同意에 基因하는 것이나 前者는 同意가 表明된 必要가 있음에 反하여 後者는 反對가 表明되지 않으면 同意라고 볼수 없을 것이다.

어떤 國家가 어떤 特定の 國際食品規格을 受諾할것 같으면 그 나라는 規格의 모든 要求事項, 例를 든다면 內容, 定義, 表現등에 拘束되는 것이다. 어떤 規格을 受諾한 나라는 또한 어떤 製品이 規格의 要求事項을 모든것에 適合하게 하는 경우와 당해 國內에 있어서 規格이 適用되는 製品의 自由로운 流通을 認定하는 義務가 있다. 그리하여 規格에 適合되고 있는 어떤 製品의 流通을 法的이고 行政的인

方法에 의하여 妨害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受諾國은 그의 國內에 있어 流通되는 國內產 및 輸入品の 모든 것에 對하여 規格의 條項을 統一的으로 公平히 適用하는 責任을 가진다.

이와같은 原則은 重要な 것이며 이에 따라서 國產 및 輸入食品에 있어 國際食品規格이 意圖하고 있는 統一性和 消費者를 保護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國際食品規格을 受諾하고 있는 委員會의 會員國은 委員會의 事務局에 그의 뜻을 書面으로 送付하는 것이며 어떤 制限은 없다. 언젠지 그의 受諾의 撤回 또는 그의 修正을 할수 있다.

事務局은 이것을 WHO 및 FAO의 全會員國 및 準會員國에 通知한다.

委員會에 의하여 勸告된 食品規格은 일단 어떤 나라에 의하여 受諾되면 民間航空의 分野에 있어서 시카고附則과 같이 그나라 法規를 通하여 國內의 効力을 發揮한다. 이것은 會員國, 特히 法律分野에 있어 未成熟한 發展途上國에 있어 統一的인 食品法規의 作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統一性은 輸出國과 輸入國사이에서 어떤 食品에 對하여 要求事項의 差異를 減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存在하고 있는 障害를 除去하게 되고 食品貿易은 보다더 容易하게 된다. 이와같은 것이 食品規格을 잇어서는 아니될 重要한 一面인 것이고 合同計劃은 目的의 하나이기도 하다.

4. 結 論

委員會(The Codex Alimentarius Commi-

ssion)과 合同計劃(The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은 FAO와 WHO의 協力の 成果이다. 委員會는 食品規格의 分野에 있어 國際的인 活動體로서 會員國뿐만 아니라 넓은 國際社會를 위한 有益한 活動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委員會에 의하여 採擇된 食品規格은 會員國에 對하여 그의 同意가 없으면 拘束力이 없는것은 事實이나 이와같은 規格은 긴 協議過程과 意見交換 후에 採擇된 것이므로 많은 國家들에 의하여 저체없이 受諾되는 것이다.

合同計劃 그의 主要機關인 委員會 및 그 執行機關인 執行委員會의 創設을 專門機關의 사이에 國際的인 協力이라고 하는 면에서 興味깊은 發展形態인 것이다.

委員會의 事業이 成功을 云云하는 것은 아직 빠르지만, 現在 93個國(1977年 7月 現在 115個國)이라고 하는 會員數를 考慮한다면 先進國이나 發展途上國이나 間에 世界國家들의 利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活動이 急速히 增大될 것으로 생각되고 많은 期待를 하게 되는 것이다.

'78年은

有害食品 根絶의 해